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29층 / 12개동 / 총 1,321세대 중 일반분양 785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월(예정)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확정	(예비)
민영 주택	039.5700	39	39.5700	14.3100	53.8800	26.6700	80.5500	20	2	(6)
	046.3100	46	46.3100	16.4500	62.7600	31.2200	93.9800	147	15	(45)
	051.6100	51	51.6100	18.8700	70.4800	34.7900	105.2700	108	11	(33)
	059.9800A	59A	59.9800	21.4800	81.4600	40.4400	121.9000	360	36	(108)
	059.5100B	59B	59.5100	22.0800	81.5900	40.1200	121.7100	102	10	(30)
	84.5500A	84A	84.5500	28.8800	113.4300	57.0000	170.4300	34	3	(9)
	84.9500B	84B	84.9500	30.7600	115.7100	57.2700	172.9800	14	1	(3)
합 계								785	78	(234)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입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²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39	46	51	59A	59B	84A	84B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등	-	3 (9)	2 (6)	7 (21)	2 (6)	-	-	14 (42)
장기복무제대군인	-	3 (9)	3 (9)	7 (21)	2 (6)	1 (3)	-	16 (48)
10년이상복무군인	-	3 (9)	2 (6)	7 (21)	2 (6)	1 (3)	-	15 (45)
중소기업근로자	2 (6)	3 (9)	3 (9)	8 (24)	2 (6)	1 (3)	1 (3)	20 (60)
장애인	인천시	-	1 (3)	1 (3)	3 (9)	1 (3)	-	6 (18)
	경기도	-	1 (3)	-	2 (6)	1 (3)	-	4 (12)
	서울시	-	1 (3)	-	2 (6)	-	-	3 (9)
계	2 (6)	15 (45)	11 (33)	36 (108)	10 (30)	3 (9)	1 (3)	78 (234)

-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분양일정(변경)

구분	변경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2. 07. 14. (목)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com)
건본주택 개관	2022. 07. 15. (금) (예정)	(건본주택)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77번지 / ☎ 1533-1497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 07. 25. (월) 09:00~17:30(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2. 08. 03. (수) (예정)	개별조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공인인증서 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25 607 1501 866"> <thead> <tr> <th>구분</th> <th>인천광역시</th> <th>서울특별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격</p>	<p>•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함)</p> <p>[추천기관]</p> <table border="1" data-bbox="331 1207 1497 1930"> <thead> <tr> <th>구분</th> <th>관련법규</th> <th>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등</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 rowspan="2">인천보훈지청 복지과</td> </tr> <tr> <td>장기복무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 <td>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인천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등)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적격당첨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적격여부 확인결과 관련 법령상 부적격한 자가 신청 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07.14.(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며,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홈페이지 (<http://www.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com>)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77

- 분양문의 : ☎ 1533-1497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www.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com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